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서 (☐ 본신고 ☐ 내신고)				처 리 기 간	
신 청 인	성 명 (법 인 명)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주소) (전화번호) (e-mail)			
	업 종 (직 업)				
신 청 내 역	취 득 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 득 상 대 방	(성명) (주소)			
	부 동 산 의 종 류	☐ 주택 ☐ 토지 ☐ 상가 ☐ 기타()			
	취 득 목 적	☐ 주거 ☐ 주거이외(투자등) ☐ 임차(임차기간 : . . . ~ . . .)			
	소 재 지				
	면 적				
	취 득 가 액			현지통화	미달러 환산액
	총취득금액(A = B + C)				
	국내송금액 (B)	취득자금 국내송금액			
		모기지론(원리금상환송금예정금액)			
	현지조달액 (C)	모기지론(원리금상환현지조달금액)			
		기 타 : ()			
	취 득 자 금 수 취 인	수 취 인 명			
신고인과의 관계		☐ 중개인 ☐ 본인 ☐ 배우자 ☐ 기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고수리 조건 : 사후관리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 : (인)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임대차) 계약서 2. 부동산감정서 3. 기타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시 필요한 서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관련 유의사항

1.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을 담보로 현지의 금융기관(비거주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무는 면제되므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됨 →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현지조달액 및 현지금융기관 등을 기재함
2. 내신고가 가능한 경우
 - 가. 분양과 관련한 청약대금을 사전에 송금해야 하는 경우
 - 나. 매매물건이 확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의 사전지급 없이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내신고를 한 경우 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신고를 하거나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1년 이내 사후신고시 본신고 대상에 해당함
3.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추가 송금을 통한 현지조달액 감액 등)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내용변경 신고해야 함
※ 신고수리받은해외부동산(A)을 처분하고 다른 해외부동산(B)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A)에 대한 처분 보고와 (B)에 대한 취득신고를 동시에 이행한 후 거래해야 함(내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4. 해외부동산 취득 후 현지 금융기관(또는 비거주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를 신고해야 함
5.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에 따라 아래 보고서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1)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 이내
 - 2)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처분(변경)후 3개월 이내(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 수령시 수령시점)
 - 3) 수시보고서 : 매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서류
6.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주요항목 기재 요령

- 본신고 및 내신고 구분 : 해당 항목을 체크
- 총취득금액(A) :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총액
- 국내송금액(B)
 - 가. 취득자금 국내 송금액 : 부동산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송금하는 금액
 - 나. 모기지론(원리금상환송금액예정액) : 모기지론 금액 중 국내에서 송금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
- 현지조달액(C)
 - 가. 모기지론(원리금상환현지조달금액) : 모기지론의 원리금 중 현지에서 급여소득 혹은 임대소득 등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
 - 나. 기타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취득보유가 인정된 자금 혹은 현지 소득금액을 기재
- 신고수리금액 : 국내송금액(B)의 합계금액을 기재

